다문화가족학생지원규정 5-2-7

규정번호 5-2-7
제정일자 2014.3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1차 개정
관리부서 학생복지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학생의 수업 참석 및 진로 상담 등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다문화가족 학생이라 함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취득한 자의 가족인 학생을 말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3조(차별금지) 다문화가족 학생은 학생권, 학습권, 생활복지권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, 대학구성원 모두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대학의 지원) ①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학생지원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업무
2.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사 및 진로, 취업상담에 관한 업무
3.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② 학생지도위원회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.

제5조(장학금 지급) 다문화가족학생에게는 가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(프로그램 운영)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한 차별예방을 위해 특강 및 이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)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)